

특정 감사

감사 보고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건비 집행 점검 -

2024. 8.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

목 차

- I. 감사실시 개요 1
 -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 2. 감사 중점 및 대상 1
 - 3. 감사실시 과정 1
 - 4. 감사 결과 처리 1

- II. 감사 대상 기관 현황 2
 - 1. 일반현황 2
 - 2. 예산현황 2

- III. 감사 결과 3
 - 2022년 인건비 이월 집행 부적정 3

- IV. 처분 요약 6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라 한다)의 인건비 부정 집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위법성·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 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민원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기정원의 인건비 이월 집행 여부, 인건비 이월 집행의 적정성, 이월 인건비 반납 절차의 적정성, 경영 평가성과급 임의 상향 지급 여부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실지 감사에 앞서 2024년 4월 24일부터 같은 해 5월 7일까지 서면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같은 해 5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5일간 감사 인원 3명을 투입하여 관련 서류 검토, 담당자 면담 등 실지 감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감사 요청 사항과 관계자 문답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같은 해 7월 19일까지 추가 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 결과 처리

감사 결과 확인된 사항과 관련하여 피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질문·답변 과정을 거치는 등 의견을 수렴하고, 중기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24년 7월 31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1. 일반현황

가. 설립 근거 및 주요 업무

기정원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1월 22일에 설립되었다.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중소제조업의 스마트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지원,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인력

기정원의 조직은 5본부, 1단, 19실, 1부설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력은 정원 291명, 현원 28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산현황

기정원의 2024년 예산은 총 1,695,007백만원이며, 정부수탁사업 1,687,648백만원(R&D사업 1,377,806백만원, 비R&D사업 309,842백만원)과 기관운영비 7,359백만원으로 구성된다.

Ⅲ. 감사 결과 : 2022년 인건비 이월 집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2016.1.28.)을 발표하였다.

이에, 기정원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2017년부터 일반직 및 연구지원직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기정원의 성과연봉제는 연봉(기본연봉 + 성과연봉 + 직무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정원은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이하 “예산운용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잔여인건비를 활용하여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연봉 정액인상분을 지급하고 있다.

2. 법령 등 관련 근거

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조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제48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예산의 이월을 허용하고 있다.

예산의 이월이란 해당 연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월 방식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된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는 것으로, 사고이월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제4항 및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월한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재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 감사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정원은 회계연도 내에 노사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인건비 및 세출예산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실시하는 경우 이사회 사전 승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월명세서를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검토결과 및 문제점

가. 2022년 인건비 집행 경위

2022년 기정원은 노사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어 연내 인건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사고이월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하여 해당 인건비를 사고이월 처리하여 집행하고자 2022년 12월 30일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인건비 585백만원을 예수금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후 기정원은 2023년 1월 13일 노사합의를 통해 기본연봉(정액인상분)을 확정된 후 이월 인건비(585백만원)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기본연봉, 성과연봉, 수당 등) 처리하였다.

나.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인건비 이월 집행

먼저, 기정원이 이월 집행한 인건비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월 가능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①「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및 직책수행경비와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이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②국가 예산이 회계연도 독립 및 현금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를 이월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인건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월 가능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정원의 인건비 이월 집행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기정원은 인건비가 이월 집행이 가능한 경비라고 판단하여 이월을 실시한 것이라 주장함에 따라 인건비 이월시 관련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하였다.

①예산의 사고이월을 위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실시하고 집행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지출원인행위만 실시한 후 이사회 승인 없이 인건비 예산을 이월하였고, ②「국가재정법」 및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월한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재부장관, 중기부 장관, 감사원장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정원은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건비가 이월 가능 경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정원은 이월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 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인건비를 이월 집행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라며, * A 본부장, B 실장 (개인주의)
- ② 노사간 임금 협상을 연내 마무리하여 인건비를 이월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인건비 집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IV. 처분 요약

1. 처분 요구사항 일람표 : 주의·경고 3건(기관 1, 개인 2)

구분	건명	관계기관	처분요구		조치기한	감사자
			기관	개인		
1	2022년 인건비 이월 집행 부적정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경고	주의(2)	2024.10월	고주현

2. 개인 처분 명세 : 주의 2명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처분계획			행위
				주의	경고	징계	
1	기정원		A	○			인건비 이월 집행
2	기정원		B	○			인건비 이월 집행